

○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(1995. 12. 28. 대통령령 제14,841호) 제13조제1항제5호, 제21호

4. 조례(안)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 및 기타 참고사항

○예산조치필요성 여부: 필요

첨부: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중 “910명”을 “938명”으로 하고, 동조 제3호중 “487명”을 “468명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의 총수) 마포구의 본청·직속기관 및 동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.	제2조(정원의 총수)
1. 구 본 청(구청): 910명
2. (생략)	1.: 938명
3. 동 : 487명	2. (현행과 같음)
	3.: 468명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1996. 7. 11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1996년 6월 13일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 1996년 6월 14일

다. 상정일자: 제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'96. 7. 11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 부과과장 김재형

가. 개정이유

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따라 동 조례중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농업·수산업·축산업·임업협동조합이 구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규정하였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이 삭제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266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 조합의 중앙회가 구관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

동산에 대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)

○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동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“과세시가표준액”에서 “시가표준액”으로 개정함(안 제21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동 개정조례안은 조합의 중앙회가 아닌 농업협동조합, 수산업협동조합, 축산업협동조합, 임업협동조합이 구관사업 등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었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의 규정이 '95. 12. 6. 삭제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266조203항에 근거한 농업·수산업·축산업·임업협동조합중앙회에 한해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안 제19조제1항과 안 제28조제1항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며

○안 제21조제2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을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

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질의요지(정만직 위원): 동 개정조례안중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하는 데 차이점은 무엇인가?

○답변요지(김재형 부과과장): 종전에는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재산세 및 종토세를 부과하였으나 금년 1월 1일부터 공시지가에 의한 과세로 전환되어 현시가의 80%를 적용토록 되어 있는 바 종전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과세와 실질적인 차이는 없음.

- 5. 토론요지: 없음
- 6. 심사결과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- 8. 기타사항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83
----------	----

제출일자: 1996. 6. 13.
제 출 자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따라 동 조례중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개정골자

○농업·수산업·축산업: 임업협동조합이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규정하였던 지방세법 제266조제4항이 삭제 개정됨에 따라, 동법 제266조제3항에 근거하여 동 조합의 중앙회가 구판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서만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9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).

○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 제187조제2항 및 제111조제2항제2호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8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“과세시가표준액”에서 “시가표준액”으로 개정 함(안 제21조제2항).

3. 개정근거

○지방세법(1995. 12. 6. 법률 제4995호) 제3조, 제9조, 제111조제2항제2호, 제187조제2항 및 제266조제3항.

○지방세법시행령(1995. 12. 30. 대통령령 제14,878호) 제80조

4. 개정조례(안): 별첨

5. 예산조치필요성: 불필요

붙임: 1.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2. 신·구조문대비표

첨부: 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1호중 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”을 “법제266조제3항에서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”으로 한다.

제21조제2항중 “과세시가표준액”을 “시가표준액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중 법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”을 법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건축물 을 말한다. 1.~4.(생 략) ②(생 략)	제19조(구판사업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) ① 법 제266조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1.~4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제21조(과세표준) ①(생 략)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영 제80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한 다.	제21조(과세표준) ①(현행과 같음) ②시가표준액..... ...
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제3항 및 제4항에서 “구판사업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 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용 토지를 말한다. 1.~4.(생 략) ②(생 략)	제28조(구판사업등 토지에 대한 경감) ①법 제266조 제3항에서 “그 사업에 직접 사 용하는 부동산”이라 함은 1.~4.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

서울특별시마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(안)
심사보고서

1996. 7. 11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1996년 6월 13일
마포구청장 제출

나. 회부일자:1996년 6월 14일

다. 상정일자:제39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
(’96. 7. 11.) 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제안설명자:부과과장 김재형

가. 개정이유

○임대주택에 대한 구세감면대상중 공동주
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주택의 입주자 공
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까지
확대하는 등 구세감면조례의 운영상 미비점
을 보완하고자 함

나. 주요개정골자

○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

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공동
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
설 및 복리시설로 구분확대하여 명확히 규
정함(안 제12조제1항)

○전용면적 40m²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의
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면제대상을 공동주택
및 그 부속토지로 하되, 공동주택의 입주자
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
설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하
여 규정함(안 제12조제2항)

○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개 이상의
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
294조의 규정에 의거 감면율이 높은 것
하나만 적용하는 규정 신설(안 제18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관수)

○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과세면제, 불
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
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
도록 지방세법 제9조에 규정된 바,

○동 개정조례안은 전용면적 60m² 이하로
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5세대 이상의
공동주택과 전용면적 40m² 이하로 영구임대